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고 제2023-176호

보 상 계 획 공 고

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성남-장호원(제6-2공구)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(이하 '토지보상법'이라고 함)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니,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 등을 열람하시고, 보상대상 토지 등에 대하여 이의(보상관련)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공익사업의 개요

사업명	사업위치	사업규모 및 기간	보상담당기관 및 담당자 전화번호	시 공	
				시공사	전화번호
성남-장호원 (제6-2공구) 도로건설공사	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은봉리 ~ 이천시 장호원읍 진암리	총 9.1㎞ '22.6.~'28.5.	서울지방국토관리청 02-2110-6759 02-2110-6755	강산건설 (담당자: 정경일 차장)	031-642-0943

2. 보상대상 : 위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금번 보상대상 토지 및 지상(지하)물건 등(권리포함)

ㅇ 토지 104필지, 97,416.6㎡, 토지소유자 54명 및 토지 위 지장물 일체

※ 토지의 세부목록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인터넷홈페이지(srocm.molit.go.kr/알림마당/국토관리청 공고)에 게재하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합니다.

3. 열람(이의신청)기간 및 장소

ㅇ 열람 기간 : 2023.9.25.(월) ~ 2023.10.11.(수)

ㅇ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

구 분	장 소	연락처	비고
보상기관	서울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 정부과천청사 2동	02-2110-6759/5 (fax: 02-2110-0684)	
현장사무실	성남-장호원6-2(강산건설) 현장사무실 경기도 이천시 장호원읍 와현리 257 강산건설	031-642-0943 (fax: 031-642-0940)	

* 열람은 해당 지자체(이천시)에서도 가능함

4. 보상시기 : 2023년 12월 이후 보상 협의 예정(절차 및 구비서류 개별통지)

※ 보상계획 통지 후 사업계획 변경 및 과거에 보상을 하였거나 보상대상이 아닐 경우 등은 보상을 하지 않으며,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청구서 접수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합니다. 또한, 보상시기는 사업시행 제반여건에 따라 지연되거나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.

5. 보상방법 및 절차

ㅇ 보상액 산정 및 통지

- 보상액은「토지보상법」제68조 및「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」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3인(시·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추천이 없을시 2인)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하여 협의요청서와 함께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별적으로 통지해 드립니다.

ㅇ 보상금 지급

-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등의 소유권을 국가로 이전한 후 보상금을 지정계좌로 지급합니다. (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결절차를 통하여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)

ㅇ 보상절차 :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→ 감정평가의뢰 및 실시 → 보상금산정 → 보상협의요청

6. 감정평가업자 추천

ㅇ「토지보상법」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시·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습니다.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본 공고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◀ 감정평가업자 추천서 (양식-예시) ▶

토 지 소재지	지 번	편입(예정) 면적(㎡)	토지 소유자			날 인 (서명)	전화번호 (자택 또는 휴대전화)	감정평가 업자
			성 명	주민등록번호 (법인등록번호)	주 소			

※ 제출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**소유자 본인의 자필로 서명 및 날인(법인, 종중의 경우 직인 날인, 대리서명 불가), 신분증 사본 첨부**하여야 하고, 사업시행자 등은 토지소유자의 추천의사를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, 사실관계에 따라 추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7. 보상협의회

ㅇ「토지보상법」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등을 위해 구성하는 보상협의회(위원장 1명 포함, 8명 이상 16명 이내)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으로 구성합니다.

8. 기타 사항

ㅇ **본 공고와 관련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해서는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편입면적(수량)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, 변경되는 경우에도 감정평가업자 주민추천에 대해서는 본 공고의 사업별 소유자수 및 면적 기준에 따릅니다.**

ㅇ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하는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 공고(홈페이지 게재)로 대신합니다.

ㅇ 편입토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연고자 및 경작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3년 9월 25일

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